

강의료 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의의 구분) 본교의 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평상수업을 보통강의라 한다.
2. 국내외 저명인사에 의한 수업을 특별강의라 한다.
3. 전임교원 책임시간 이외의 수업을 초과강의라 한다.
4. 비전임 교원이 담당하는 수업을 시간강의라 한다.

제3조(강의 책임시간) ① 전임교원의 책임시간 수는 대학(학부)과 각 대학원의 담당 시간을 통산하여 11시간으로 하며, 초과강의 시간계산은 별표의 책임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한다.

② 보직을 가진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을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보직을 겸한 경우에는 상위보직의 책임시간으로 한다.

③ 부속 및 부설기관 담당시간은 제외한다.

제4조(책임시간미달) ① 전임교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책임시수에 미달될 때에는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달 시수는 다음 학기의 책임시수에 합산한다.

② 책임시수가 1학기에 초과되고 2학기에 미달된 경우에는 2학기에 부족한 시수 만큼 1학기에 지급된 초과강의료를 환입하여야 하며, 책임시수가 1학기에 미달되고 2학기에 초과된 경우에는 1학기에 부족한 시수만큼의 초과강의료를 2학기에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강의 담당시간이 연간 총 책임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학년도에 이를 보충하여야 하며 미달된 책임시간을 그 다음 학년도까지 보충하지 못한 교원은 이를 보충할 때까지 승급을 제한하고, 교내연구비 지원을 중단한다.

④ 당해 학기의 책임시간 초과분을 다음 학기의 부족시간으로 충당할 수 없다.

제5조(강의료 지급 기준) 강의료 지급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강의시간 단위는 보통강의는 50분 수업을 1시간으로 한다.
2. 초과강의료는 실제 강의시간 수가 책임 시간 수를 초과한 교원에게 지급한다.
3. 시간강의료는 총장의 위촉에 따라 시간강의를 담당하는 자에게 실제로 강의한 시간 수에 의하여 지급한다.
4. 본교 행사(체육대회, M.T, 실습 등) 본교 사정 및 출장으로 휴강하였을 경우 강의료는 지급하되 반드시 보강을 필하여야 한다.

제6조(한계시간) ① 본 대학교 교원의 주당 한계시간은 별표와 같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계시간을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타 대학교 출강) ① 본교 전임교원이 타 대학(교)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학기 시작 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타 대학 출강 시 본교 한계시간을 충족하여야 하고 타 대학은 최대 2강좌만 허용 한다.
- ③ 책임시간의 일부감면을 받은 보직교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대학(교)에 출강할 수 없다.

제8조(강의료 지급 기준액) 시간당 강의료의 지급 기준액은 매년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제9조(특강료) 초빙강사(국내·외) 특강료 및 외국인 시간강사의 강의료 지급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초빙강사는(국내·외) 특강료 및 외국인 시간강사의 강의료는 증액 지불할 수 있다.
- 2. 외국인 강사의 강의료는 고용계약서에 따른다.

제10조(강의료 지급의 특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의료 지급을 별도로 한다.

- 1. 수강인원이 70명 이상인 경우, 강의료 정액의 50퍼센트를 추가 지급한다.

제11조(강의료 지급 기준일) 강의료 지급일은 4주 단위가 지난 첫 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 1.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교원 주당 책임시간의 감면시간 및 한계시간

구분	직 위	책임시간	한계시간
1	부총장	6	11
2	처장, 대학원장, 신대원장	6	11
3	학과장	9	15
4	부설연구소장 및 부속기관장	11	15
5	전임교원	11	15
6	비전임교원	-	11